

인사규정, 단체협약상 당연면직,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 집행정지 형사판결 확정 BUT

해고의 적법요건 불충족 시 부당해고: 서울고등법원 2019누63043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(1) KT&G 직원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

(2) 인사규정 -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-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

(3) 회사 - 당연면직 통보

(4)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요지 - 당연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

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, 집행유예 판결로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

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

가 무너졌다고 할 수 없다.

2.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-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, 부당해고 인정

- (1) A씨는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.
- (2)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'해고'라고 할 것이고,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
- (3)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단체협약상 '당연면직 사유'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.
- (4) 당연면직 통보는 성질상 해고로서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(5) A씨가 관련 형사판결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KT&G가 A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

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
- (6) 결론 -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그 절차도 적법하나, 이 사건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.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